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수신처참조
참 조 원무부서장
제 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관련 QA 안내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
2. 위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3. 이에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(수정본, '24.5.16.기준)을 공개하여 불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: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Q&A(24.5.16.기준) 1부.

※ 붙임자료는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수신처
전국병원장

차장 김영진 팀장 노환우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시행:보험 제 2024-185 (2024.05.17)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59) E-mail : yjkim@kha.or.kr